

#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2. 16) 상정
-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2. 16)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회계과장 김 병 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303호, 2010. 7. 26. 공포·2010. 10.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정된 내용에 맞게 위원 위촉대상자를 정비함(안 제2조제2항).
- 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정비함(안 제12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제13조 및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제1항중 “직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감리대상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수 당	<u>7만원</u>	
	여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전 문 가	심사 또는 자 문 비	20만원	제9조에 따른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만원	